

사다리는 통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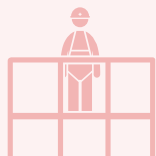
사다리 위에서 작업하시면 안됩니다.

사다리에 의한 재해 발생 현황



- 최근 10년간(2008년~2017년) 사다리로 인하여 38,859명이 다치고,
[27,739명(재해자의 71%)이 중상해]
노동자 317명이 소중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 사다리는 지게차와 함께 사망사고 1위의 기인물입니다.

사다리 사고 근절을 위해서



- 사업주는 사다리 대신 이동식비계 또는 말비계 같은 안전한 작업발판을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 작업자는 안전모를 착용하고, 안전대를 부착설비에 걸고 작업해야 합니다.

기존 작업방식 잘못된 사용 예시



사다리는 작업발판으로 사용하면 안됩니다.

규정 작업방식 바른 사용 예시



사업주는 이동식비계와 같은 안전한 작업발판을 지급해야 합니다.



작업자는 안전모를 착용하고 안전대를 부착설비에 걸고 작업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사다리를 작업발판으로 사용하게 하면 형사처벌 될 수 있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사망사고 발생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



고용노동부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